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시 구속피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근거 규정 신설〉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5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4. 12. 3.
3. 회 부 일: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함(제86조제1항).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사법경찰관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강제퇴거명령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제퇴거 사유인 현행법 제46조제1항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제59조제2항²⁾)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는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게 됨(제62조제1항).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해당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그를 제64조³⁾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함(제62조제2항⁴⁾).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이하 생략)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4)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함(법 제86조제1항5)).

한편, 2020. 2. 4.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021. 1. 1. 시행)으로 경찰의 범죄 수사 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바,⁶⁾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병의 인도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57

인도할 수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